

---

# 1381 해외인증자료

---



작성일자 2026.01.30.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 (문의)

캡슐형 세탁세제: 세탁기 전용 세탁세제, 수용성 필름이 적용된 1회 사용량 정량화 캡슐형 세제, 어린이 삼킴 방지를 위한 패키지(어린이 보호 포장),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1) 캐나다 수출하기 위한 캡슐형 세제의 필요 인증 항목 및 절차

2) 캐나다 현지의 규격 유무

3) 캐나다 현지 규격 및 미국/ EU국가의 공통 규격과 중복되는 인증 규격 유무

예: 미국 규격(EPA, CPSC, TSCA, ASTM) 또는 EU 공동 규격(예: REACH, CLP, Detergent Regulation (EC 648/2004))

4) 안전자료(SDS), 성분 공개, 라벨링 요구사항 등

5) 해외 수출을 위한 해외 인증 규격 시험을 진행하는 시험 기관 정보

## (답변)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답변 개요

1) 캐나다 수출하기 위한 캡슐형 세제의 필요 인증 항목 및 절차

아래 내용 참고

2) 캐나다 현지의 규격 유무

아래 내용 참고

3) 캐나다 현지 규격 및 미국/ EU국가의 공통 규격과 중복되는 인증 규격 유무

예: 미국 규격(EPA, CPSC, TSCA, ASTM) 또는 EU 공동 규격(예: REACH, CLP, Detergent Regulation (EC 648/2004))

캐나다의 경우 일부 미국의 ASTM규격을 차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강제사항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통용됩니다. 안내해드리는 해당 규격은 강제규격이 아닙니다.

4) 안전자료(SDS), 성분 공개, 라벨링 요구사항 등

안전자료는 산업용물질 규제에 해당하며 소비자용 제품 규제와는 별개의 규제입니다. 하단에 안내해드리는 정보는 소비자용 제품 규제입니다.

## 5) 해외 수출을 위한 해외 인증 규격 시험을 진행하는 시험 기관 정보

### ▶ 규격

규격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사거나 한국표준정보망 (KSSN)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관련 규격 파악
- 규격 구입: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http://www.kssn.net))

### ▶ 시험기관

#### # 한국인정기구(KOLAS)인정 국내 시험소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서는 특정 기관이 수행하는 시험/교정 등의 세부 항목에 대해 인정하고 해당 분야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각 시험기관의 적격성을 인정하며, 공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합니다. (즉, 특정 규격/시험에 대해 KOLAS 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관이 KOLAS 시험기관입니다.)

- 한국인정기구 KOLAS > 시험기관검색  
<https://www.knab.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 # 비 KOLAS 기관

위의 KOLAS 기관이 아니어도 시험이 가능한 기관은 많으며, 미국 수출이 목적이라면 미국계 시험기관이나 미국 내 시험기관 또는 글로벌 시험인증기관 등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국제인증기관 한국 지사

그 외에 품목별로 시험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진출해 있는 국제인증기관으로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소재한 대표적인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만 기재)

- Bureau Veritas / 02-555-8922 / [www.bureauveritas.co.kr](http://www.bureauveritas.co.kr)
- Intertek / 02-567-7474 / <http://www.intertek.co.kr>
- SGS / 02-709-4652 / <http://www.sgsgroup.kr/>
- TUV-SUD / 02-3215-1100 / [www.tuv-sud.kr](http://www.tuv-sud.kr)
- TUV Rheinland / 02-860-9860 / <https://www.tuv.com/korea/ko/>
- Nemko / 031-330-1700 / <https://www.nemko.com/ko>
- 기타

#### ※ 업무대행기관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fication/info/concList.do?key=9093>

▶ 캐나다 소비자제품 안전법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CCPSA)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1.68/page-1.html>

# 세탁세제에 대한 라벨링 요건

캐나다의 세탁 세제는 캐나다 소비자제품 안전법(CCPA)에 따라 소비자 화학 물질 및 용기 규정(CCCR)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벨에는 위험 기호, 이중 언어 경고 및 안전 지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이 위험물로 분류된 경우 포장에는 어린이 보호 기능이 있어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합니다.

# 세탁세제 포장요건

세탁세제 포장은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제품이 유해물로 분류될 경우 어린이 보호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벨에는 CCCR(캐나다 소비자 제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명확한 위험 기호와 이중 언어 경고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CEPA)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15.31/>

# 세탁 세제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제한

캐나다 환경 보호법(CEPA)과 소비자 화학 물질 및 용기 규정(CCCR)은 특정 독성 및 부식성 물질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또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규정은 세탁 제품의 VOC 농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환경규제

캐나다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규정을 통해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VOC 농도를 제한하고, 캐나다 환경보호청(CEPA)을 통해 화학 물질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평가하여 세탁 세제의 환경적 영향을 규제합니다.

\* 참고

- HealthyCleaning 101 > Canadian Facts about Soaps and Detergents

<https://healthycleaning101.org/soaps-and-detergents/>

- Society for Chemical Hazard Communication > Regulation of Cleaning Products in Canada

[https://www.schc.org/assets/meetings/fall\\_2020/posters/Regulation%20of%20cleaning%20products%20in%20Canada.pdf](https://www.schc.org/assets/meetings/fall_2020/posters/Regulation%20of%20cleaning%20products%20in%20Canada.pdf)

- Government of Canada > Concentration of Phosphorus in Certain Cleaning Products Regulations

<https://pollution-waste.canada.ca/environmental-protection-registry/regulations/view?Id=16>

▶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CCPSA)**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1.68/page-1.html>

# **Consumer Chemicals and Containers Regulations (CCCR)**

캐나다에서는 세탁 세제의 분류, 포장 및 라벨링이 캐나다 소비자 제품 안전법(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에 따른 소비자 화학 물질 및 용기 규정(Consumer Chemicals and Containers Regulations, CCCR)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 규정은 소매용 세탁 세제에 독성이나 인화성 등의 잠재적 위험을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위험 기호와 이중 언어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은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위험 등급에 따라 어린이의 우발적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 포장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CCCR은 특정 독성 및 부식성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화학 물질 농도를 제한하여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세탁 제품이 매일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관련규제**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1.68/page-1.html>

Consumer Chemicals and Containers Regulations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2001-269/FullText.html>

\* 참고

- Industry Guide to the Consumer Chemicals and Containers

[https://publications.gc.ca/collections/collection\\_2024/sc-hc/H129-149-2023-eng.pdf](https://publications.gc.ca/collections/collection_2024/sc-hc/H129-149-2023-eng.pdf)

# **규제내용**

캐나다 소비자제품안전법 (CCPSA) 에 따른 2001년 소비자화학제품 및 용기 규정(CCCR, 2001)은 위험 기호, 경고문, 어린이 보호 포장 요건을 포함하여 소비자 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안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위험한 제품이 명확하게 식별되고 어린이가 열기 어렵도록 하여 중독이나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어린이 보호 포장(Child-Resistant Packaging (CRP/CRC))**: "독성", "매우 부식성이 강한" 제품 또는 특정 위험 액체(예: 세탁 세제 캡슐 등)에 대해 어린이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포장 방식입니다.

- **일회용 용기(팻)에 대한 특정 경고(Specific Single-Use Pod Warnings)**: 어린이 보호 기능이 있는 일회용 용기(팻)의 경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정 경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USE ENTIRE CONTENTS ON OPENING. THIS CONTAINER IS NOT CHILD-RESISTANT ONCE OPENED." ("UTILISER LA TOTALITÉ DU CONTENU APRÈS OUVERTURE. UNE FOIS OUVERT, LE CONTENANT N'EST PLUS UN CONTENANT PROTÈGE-ENFANTS.")

- **위험 기호 및 경고(Hazard Symbols & Warnings)**: 제품은 주 표시 패널에 특정 위험 기호 (pictograph and frame)와 함께 신호어("DANGER," "CAUTION," "EXTREME DANGER") 및 특정 위험

/응급 처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 **적용 범위(scope)**: 본 규정은 세척제(cleaners), 세제(detergents), 용제(solvents) 등 다양한 소비재에 적용됩니다.

- **관련규격**

액체 세탁 세제 패킷: 업계에서는 1회용 세제 패킷의 어린이 안전 포장을 위해 ASTM F3159-15e1과 같은 엄격한 자발적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장됩니다.

### ▶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CEPA)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C-15.31/>

# **관련규제**

#### # Domestic Substances List (DSL) or the Non-Domestic Substances List (NDSL) 화학물규제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은 세탁 세제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을 규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EPA에 따라 제조업체는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화학 물질이 국내 물질 목록(DSL) 또는 비국내 물질 목록(NDSL)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NDSL에 등재된 화학 물질은 수입 제한을 받으며 추적 및 신고 의무가 있어 규제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세탁 세제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도록 보장합니다.

# **새로운 물질 신고 절차 및 양식**

- Health Canada > New Substances Program of the Chemicals Management Plan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hemical-substances/chemicals-management-plan/initiatives/new-substances.html>

- Health Canada > New substances notifications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managing-pollution/evaluating-new-substances/notifications.html#s3>

- NEW SUBSTANCES NOTIFICATION (NSN) REPORTING FORM

<https://www.ec.gc.ca/subsouvelles-newsups/B6779D37-505D-44D8-AA98-DE78372DD309/NSN%20Form%20for%20C%26P%20-%20EN.pdf>

# **물질목록**

\* Domestic substances list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canadian-environmental-protection-act-registry/substances-list/domestic.html>

\* Non-domestic substances list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canadian-environmental-protection-act-registry/substances-list/non-domestic.html>

\* Health Canada > Substances Search

<https://pollution-waste.canada.ca/substances-search/Substance?lang=en>

\* Lists of substances: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각종 목록 모음)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canadian-environmental-protection-act-registry/substances-list.html>

\* **참고**

- Chemical Substances > Federal laws and programs

<http://www.chemicalsubstanceschimiques.gc.ca/approach-approche/laws-lois-eng.php>

- New Substances Notification Regulations (Chemicals and Polymers) (SOR/2005-247)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2005-247/>

- Health Canada > Canada's approach on chemicals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hemical-substances/canada-approach-chemicals.html>

- Health Canada > Canada's system for addressing chemicals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hemical-substances/canada-approach-chemicals/canada-system-addressing-chemicals.html>

- ChemSafetyPro >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CEPA)

[https://www.chemsafetypro.com/Topics/Canada/Canada\\_Environmental\\_Protection\\_Act\\_New\\_Chemical\\_Notification.html](https://www.chemsafetypro.com/Topics/Canada/Canada_Environmental_Protection_Act_New_Chemical_Notification.html)

## # Canada 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Regulations

Volatile Organic Compound Concentration Limits for Certain Products Regulations

SOR/2021-268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2021-268/index.html>

캐나다의 특정 제품에 대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농도 제한 규정(SOR/2021-268) 은 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소독제는 2025년부터 시행), 개인 위생용품, 자동차 용품, 가정용품 등 130개 이상의 제품 범주에 엄격한 VOC 제한을 설정합니다. 이 규정은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적용됩니다.

- 규정 준수 및 보고: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제품이 제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보고는 필요하지 않지만, 관련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표시: 제품 용기에는 제조일자 또는 해당 날짜를 나타내는 코드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 참고

- Canada.ca > Volatile Organic Compound Concentration Limits for Certain Products Regulations: Factsheet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managing-pollution/sources-industry/volatile-organic-compounds-consumer-commercial/certain-products/factsheet.html>

- Certain products and volatile organic compounds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managing-pollution/sources-industry/volatile-organic-compounds-consumer-commercial/certain-products.html>

- Intertek >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Regulations

<https://www.intertek.com/blog/2023/05-02-voc-regulations/>

## # 2-Butoxyethanol (2-BE) 규제

- 2-Butoxyethanol Regulations (SOR/2006-347)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2006-347/index.html>

; 이 규정은 폐지되었으며, 특정 유해물질 함유 제품 규정(Certain Products Containing Toxic Substances Regulations)에 통합되었습니다.

- Certain Products Containing Toxic Substances Regulations: SOR/2025-36

<https://gazette.gc.ca/rp-pr/p2/2025/2025-03-12/html/sor-dors36-eng.html>

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라고도 불리는 2-부톡시에탄올(2-BE)은 기름때 제거 효과가 뛰어나 세탁 얼룩 제거제를 비롯한 각종 세척 제품에 흔히 사용됩니다. 그러나 캐나다 환경보호법(CEPA)에 따라 2-BE는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로 간주되어 가정용 세척 제품 내 함량 제한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되는 세탁 얼룩 제거제는 2-BE를 최대 22%(w/w)까지만 함유할 수 있습니다. 제품 내 2-BE 농도는 공인된 실험실에서 측정하여 캐나다 규정에 명시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규제 영향 분석 보고서(REGULATORY IMPACT ANALYSIS STATEMENT) 발췌  
(이 내용은 규정의 일부가 아닙니다.)

2-Butoxyethanol (2-BE)

The 2-Butoxyethanol Regulations were published in the Canada Gazette, Part II, on December 27, 2006.<sup>footnote7</sup> These Regulations apply in respect of cleaning, paint and coating products set out in Schedule 1 of the 2-Butoxyethanol Regulations that contain 2-BE, which has the molecular formula C<sub>6</sub>H<sub>14</sub>O<sub>2</sub> and is specifically used in an indoor setting. These Regulations include exceptions for when 2-BE is used in a manufacturing or processing activity, in a commercial activity as paints or coatings, as a solvent in a laboratory for analysis, in scientific research, or as a laboratory analytical standard.

\* 출처 Certain Products Containing Toxic Substances Regulations: SOR/2025-36  
<https://gazette.gc.ca/rp-pr/p2/2025/2025-03-12/html/sor-dors36-eng.html>

# Concentration of Phosphorus in Certain Cleaning Products Regulations (SOR/89-501)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89-501/page-1.html>

이 규정은 캐나다에서 제조되거나 캐나다로 수입되는 세탁 세제, 가정용 식기 세척제(손 설거지용 비누 및 자동 식기 세척기용 세제 포함) 및 가정용 세정제에 함유된 인의 양을 제한합니다.

- Concentration of Phosphorus in Certain Cleaning Products Regulations

<https://pollution-waste.canada.ca/environmental-protection-registry/regulations/view?Id=16>

**Laundry Detergents**

3. The concentration of phosphorus in any household laundry detergent must not exceed 1.1% by weight expressed as phosphorus pentoxide or **0.5% by weight** expressed as elemental phosphorus.

SOR/2009-178, s. 3

4. The concentration of phosphorus in any commercial or industrial laundry detergent must not exceed 5% by weight expressed as phosphorus pentoxide or 2.2% by weight expressed as elemental phosphorus.

SOR/2009-178, s. 3

\* 출처 Concentration of Phosphorus in Certain Cleaning Products Regulations SOR/89-501 > Laundry Detergents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89-501/page-1.html#h-920517>

\*참고

Information Sheet - Concentration of Phosphorus in Certain Cleaning Products Regulations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services/water-overview/publications/concentration-phosphorus-cleaning-products-regulations.html>

SGS > Canada Amends Phosphorus Regulations -EN-09

<https://newsletter.sgs.com/eNewsletterPro/uploadedimages/000006/SGS-Safeguards-17309-Canada-Amends-Phosphorus-Regulations-EN-09.pdf>

## 문 의 처

본 센터의 해외인증조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습·연구·자료수집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사설 컨설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해당 서비스 대상이 아니므로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의 해외인증조사 서비스는 인증/표준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출, 통관/관세 관련 업무는 코트라 혹은 일반 컨설팅업체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로써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현지의 수입업체 또는 관련인증기관, 현지 KOTRA 무역관, 컨설팅기관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동향이나 인증 신뢰도, 소비자 선호도 같은 최신 현지정보는 해당지역 업계 및 소비자에게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지 바이어/수입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며 KOTRA 현지무역관에 수출관련 무역정보 및 시장정보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KOTRA 캐나다 토론토 무역관 <https://www.kotra.or.kr/KBC/toronto/KTMIUI010M.html>

▶ KOTRA 캐나다 밴쿠버 무역관 <http://www.kotra.or.kr/KBC/vancouver/KTMIUI010M.html>

또한 KOTRA 홈페이지의 문의/상담 메뉴를 통해 상세 내용에 대해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글로벌지역전문가의 답변이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답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 방법: KOTRA 홈페이지(회원 가입 필요) ⇒ '문의·상담' 메뉴 ⇒ 전화, 챗봇, 온라인 상담 선택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14>

### ▶ 한국무역협회

- 무역애로상담 및 무역현장컨설팅 1566-5114

<https://membership.kita.net/coc/problem/serviceInformation.do>

- Trade Pro 디지털 무역상담

<https://kita.net/tradePro/tradeProMain/tradeProMain.do>

### ※ 업무대행기관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fication/info/concList.do?key=9093>

※ 주의 !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기간은 귀사제품에 적용되는 시험항목, 시험기관, 귀사의 관련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컨택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